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008

발의연월일: 2022. 8. 25.

발 의 자:어기구·김종민·박광온

박상혁 · 서동용 · 소병훈

송갑석 • 윤재갑 • 윤준병

이개호 • 황 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근로기준법」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경을 악화시키는 행위(이하 "직장 내 괴롭힘"이라 함)를 금지하고, 이 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「근로기준법」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규정은 누락되어 있어 선박 내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예방하거나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가 어려워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선원의 근로관계 중 「근로기준법」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그에 따른 조치와 관련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제74조"를 "제74조, 제76조의2, 제76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선	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
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	
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	
호부터 제3호까지, 제3조부터	
제6조까지, 제8조부터 제10조까	
지, 제40조, 제68조, <u>제74조</u> , 제	제74조, 제76
107조(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	<u>조의2, 제76조의3</u>
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	
다), 제110조(제10조와 제74조	
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)	
및 제114조(제6조를 위반한 경	
우로 한정한다)를 적용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